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행정안전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탈산(脫酸)처리를 하여야”를 “탈산(脫酸: 산성 제거)처리를 해야”로 한다.

제33조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입회하여야”를 “참관해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별표 3의 도안요령 제1호 중 “장방형”을 “직사각형”으로,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중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제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중 “암거”를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로 한다.

제4조(「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측방여유”를 “옆쪽 여유”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길어깨”라 함은”을 ““갓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측방여유”를 “옆쪽 여유”로, “길어깨”를 “갓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정지시거”라 함은”을 ““정지가시거리”란”으로, “당해차도”를 “해당 차도”로, “당해차선”을 각각 “해당 차선”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원”을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 및 비교 제1호 중 “축거”를 각각 “축 간 거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길어깨”)를 (“갓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길어깨를 설치하여야”를 “갓길을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를 “제1항에 따른 갓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길어깨”를 각각 “갓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길어깨”를 각각 “갓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길어깨”를 “갓길”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길어깨를 설치하여야”를 “갓길을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길어깨”를 “갓길”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길어깨의”를 “갓길의”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을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길어깨”를 “갓길”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정지시거)”를 “(정지가시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정지시거”를 “정지가시거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의 표 중 “정지시거”를 “정지가시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지시거”를 “정지가시거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길어깨”를 “갓길”로, “포장하여야”를 “포장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3조 중 “측구”를 “길도랑(측구)”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 중 “길어깨가”를 각각 “갓길이”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길어깨”를 “갓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1호 중 “420센티미터 내지 900센티미터로

최대응력을”을 “420센티미터에서 900센티미터까지 최대응력(변형력)이”로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개정)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 중 “청부업체”를 각각 “도급업체”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소수방”을 “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복제의 제식)”을 “(복제의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제식”을 각각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기의 제식)”을 “(기의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식(制式)”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체검안서”를 “검안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의 라목 중 “트윙직 능직”을 “트윙직 능직(twill weave: 무늬가 비스듬한 방향으

로 도드라지게 짙 옷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아목 중 “리벳(rivet)”을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안감은 요크보다 2cm 길게”를 “안감은 바대(잘 해지는 곳에 안으로 덧대는 것을 말한다)보다 2cm 길게”로, “요크”를 “바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하고, 같은 표 다목 중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민방위사태발생란 중 “소산”을 “소산(疏散: 분산시킴)”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피교육자”를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체검안서”를 “검안서”로 한다.

제7조(「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양온천시설의 시설의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이상)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 ◦ 보행욕 |

- | |
|---|
| ◦ 전신샤워(Body Shower: 욕조 벽면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어깨, 허리, 종아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
| ◦ 수압마사지(백샤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물의 수압으로 목, 어깨 등을 마사지하는 것) |
| ◦ 욕조 안마(Floating Massage: 낮은 면의 노출에서 분사되는 물로 다리나 허리 등을 마사지하는 것) |
| ◦ 수중침대(Relax Lining: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등, 허리, 종아리, 발바닥 등을 마사지할 수 있는 침대) |

제8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의 개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일부인”을 각각 “일자인”으로 한다.

제9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가목 중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중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포스티유”로 한다.

별표 2 제1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제어반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마목 중 “인버터”를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구동기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다목 중 “립치밸브”를 “럽치밸브 (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난 마목 중 “유압 유니트”를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호 기계류 공간(기계실)의 안전장치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가목 중 “개문출발방지수단”을 “문열림출발 방지수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4)의 모델 구분 기준란 중 “공칭직경”을 “공칭 지름”으로 한다.

1) 문열림출발 방지장치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10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명기”를 “명확하게 작성”으로 한다.

제11조(「온천법 시행규칙」의 개정)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감안해”를 “고려해”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중 “욕수를”을 각각 “목욕물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도”를 각각 “깊이”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심도 증가”를 “깊이 증가”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심도”를 “깊이”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심도”를 “깊이”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심도”를 “깊이”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12조(「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례보상

별표 4의 표의 보상등급란 중 “장제보상”을 “장례 보상”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장제”를 “장례”로 한다.

제1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후단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1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교통수송의 도로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란 중 “인터체인지(IC)”를 “나들목(IC)”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표의 조치 완료 상황의 동원의 장비란 및 같은 표의 조치 중의 동원의 장비란 중 “굴삭기”를 각각 “굴착기”로 한다.

제15조(「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중 “PVC”를 각각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비고 제4호 중 “잔고”를 “잔액”으로 한다.

제16조(「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나목 중 “제방 높이”를 “둑의 높이”로 한다.

제17조(「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별지서식 중 “지불금액”을 각각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18조(「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3의 구조 또는 자산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PVC관”을 “폴리염화비닐(PVC)관”으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로, “슬러지처리시설”을 “침전물 처리시설”로, “저류조”를 “저류조(빗물, 하수, 오수 등을 모아두기 위해 설치하는 큰 통을 말한다)”로, “침사지”를 “침사지(沈砂池: 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통을 말한다)”로 한다.

벽돌구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흙구조, 흙벽구조, 목조, 나무 뼈대 회반죽 구조(목골 모르타르조), 그 밖의 구조의 모든 건 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표 외의 부분 제3호 중 “적요란”을 “주요 내용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표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청부액”을 “도급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호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표 중 “적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표 외의 부분 중 “교부(전도)”를 “교부(선지급)”로 한다.

제19조(「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비고란 중 “실역미필 보충역”을 “현역군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신규임용의 비고란 중 “실역미필 보충역”을 “현역군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강임의 구비서류란 중 “개폐”를 “개편·폐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호가목 및 마목 중 “포상·서훈”을 각각 “포상·훈장·포장 수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비고 중 “실역미필 보충역”을 “현역군을 제외한 보충역”으로 한다.

제20조(「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접적지역”을 “적과 접촉하는 지역”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사리”를 “자갈”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및등급의 병지란 중 “사리”를 “자갈”로 한다.

제21조(「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제1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교통체증 우심지역(尤甚地域)”을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한다.

제22조(「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호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제목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조력”을 “도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뒤쪽 중 “입회자”를 “참관인”으로 한다.

별지 제266호서식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42호서식 중 “제호”를 “명칭”으로 한다.

제23조(「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굴착기

별표 2 제29호나목 중 “음용수나”를 “먹는 물이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가목 중 “소인”을 “지움도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2) 앞쪽 중 “잔고를”을 “잔액을”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잔고가”를 “잔액이”로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24조(「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중 “지불금”을 “지급금”으로 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비망계정(備忘計定)”을 “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4조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장기선수수익”을 “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6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의 개정)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부락”을 각각 “마을”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4조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제28조(「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란 제2호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적는다”로 한다.

제29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인영”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으로 한다.

제27조 중 “직의 서리(署理)”를 “직무대리”로 한다.

별표 4 제4호다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 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가목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병기할 때”를 “함께 적을 때”로,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병기하는”을 각각 “함께 적는”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 중 “신고필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호 과목 중 “절취하여”를 “잘라내어”로 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중 “절취선”을 각각 “자르는 선”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병기하는”을

“함께 적는”으로, “병기할 때”를 “함께 적을 때”로, “병기할”을 “함께 적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병기하는”을 각각 “함께 적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마멸”을 “닳아 없어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인”으로 한다.

제30조(「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의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② (생략) ③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수소이온농도(pH) 6.5 이하인 기록물은 <u>탈산(脫酸)처리를 하여야</u> 한다. ④·⑤ (생략)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탈산(脫酸: 산성 제거)처리를 해야</u> ----.
제33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u>사용하여야</u>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에 제공하는 때에는 기록물의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계속하여 <u>입회하여야</u> 한다.	제33조(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 ----- ----- ----- <u>사용해야</u> ----- ----- ----- ----- <u>참관해야</u>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 <u>각 호</u> 와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u>측방여유</u> 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10. ----- ----- ---- <u>옆쪽 여유</u> ----- ----- -----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 <u>길어깨</u> ”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 <u>갓길</u> ”이란 ----- ----- ----- ----- ----- ----- -----.
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u>측방여유</u> 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u>길어깨</u> 에 설치하	13. ----- ----- <u>옆쪽 여유</u> ----- ----- ----- <u>갓길</u> -----

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중앙분리대· <u>길어깨</u>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15. ----- ----- ----- ----- ----- <u>갓길</u> ----- ----- -----.
16. ~ 18. (생략)	16. ~ 18. (현행과 같음)
19. “정지시거”라 함은 차선(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u>당해차도</u>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중심선상 1미터 높이에서 <u>당해차선</u> 의 중심선상에 있는 높이 0.15미터의 물체정점을 볼 수 있는 거리를 <u>당해차선</u> 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19. “정지가시거리”란 ----- ----- <u>해당 차도</u> ----- ----- ----- <u>해당 차선</u> ----- ----- ----- <u>해당 차선</u> ----- ----- -----.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 (생략)	제3조 (설계기준차량) ① (현행과 같음)
②도로구조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이하 “설계기준차량”이라 한다)의 종별 <u>제원</u> 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②----- ----- ----- <u>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u>

측거
2.7
6.5

비고) 1. 측거: 앞바퀴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2.·3. (생략)

제7조 (길어깨) ①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생략)

③일방통행도로등 분리도로의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측 간 거리
2.7
6.5

비고) 1. 측 간 거리-----

-----.

2.·3. (현행과 같음)

제7조 (갓길) ①-----
----- 갓길
을 설치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갓길-----

-----.

갓길-----

----- 갓길-----

-----.

~ (현행과 같음)

③-----

차도 좌측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도로에 있어서 주요구조부의 보호나 차도의 효용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⑤도로의 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에 접속하여 바깥쪽으로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노상시설의 폭은 이를 길어깨의 폭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의 폭) 적설지역에 있는 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길

----- 갓길-----
-----.

④-----

----- 갓길-----

-----.

⑤----- 갓길

----- 설치해야 -----

-----.

⑥-----

----- 갓길을 설치해야 ----.

⑦----- 갓길-----

----- 해당
----- 갓길-----

----- 않는다.

제8조 (적설지역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갓길의 폭) -----
----- 갓

어깨의 폭은 제설작업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정지시거) ①도로에는 당해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정지시거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시거(미터)
--------------	----------

②대형차선이 있는 2차선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지르기에 필요한 정지시거가 확보되는 구간을 두어야 한다.

제21조 (횡단경사) ①편경사를 붙이는 구간을 제외한 차도와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분리대를 제외한다)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에 의한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2조 (포장) ①차도·자전거도 등·측대·차도에 접속하는 길어깨·보도등은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

길-----
-- 정해야 ----.

제17조 (정지가시거리) ①-- 해당-----
----- 정지가시거리-----
해야 ----.

설계속도(킬로미터/시)	정지가시거리(미터)
--------------	------------

②-----

-- 정지가시거리-----
-----.

제21조 (횡단경사) ①-----
----- 갖
길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포장) ① -----
----- 갖
길----- 포장해야 ----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3조 (배수시설) 도로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측구 또는 기타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배수시설) -----
----- 길도랑(측구)

설치해야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① (생략)	제18조(자율형 건물번호판등의 규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등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u>감안하여</u> 건물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건물과 어울리거나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 -----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u>청부업체</u>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 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 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1. ----- <u>도급업체</u> <u>체</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u>청부업체</u> 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u>청부업체</u> 종업원	4. ----- <u>도급업체</u> -----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

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 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 구호· <u>소수방</u> ·방호·복구· 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 를 편성한다.	3. ----- ----- --- <u>소수방</u> (消水防: 초기 소 <u>화</u>)----- -----.
제46조(복제의 제식) 민방위 대원 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복제의 제작 양식) ----- -----.
1. 민방위 모자는 별표 2의 <u>제식</u> 에 따른다.	1. ----- <u>제작 양식</u> -----.
2. 민방위복은 별표 3의 <u>제식</u> 에 따른다.	2. ----- <u>제작 양식</u> -----.
3. 삭 제	
4. 민방위 완장은 별표 5의 <u>제식</u> 에 따른다.	4. ----- <u>제작 양식</u> -----.
5. 민방위 표지장은 별표 6의 <u>제</u> <u>식</u> 에 따른다.	5. ----- <u>제작 양</u> <u>식</u> -----.
제49조(기의 제식) 기의 <u>제식</u> (制 式)은 별표 7과 같다.	제49조(기의 제작 양식) -- <u>제작</u> <u>양식</u> -----.
제52조(기의 관리) ① (생 략)	제52조(기의 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의 깃봉·깃대·반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u>제식</u> 은 별표 8과 같다.	② ----- ----- <u>제작 양식</u> - -----.

제53조(기의 반납) ① 각급 민방 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u>반납하여야</u> 한 다.	제53조(기의 반납) ① ----- ----- ----- ----- <u>반납해야</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의 <u>제식</u> 이 변경된 경우	3. ----- <u>제작 양식</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제출하여</u> <u>야</u> 한다.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 ----- ----- ----- ----- <u>제출하여</u> <u>야</u> ---.
1. 부상자·사망자에 대한 국공 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 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한다)의 진단서 또는 <u>사</u> <u>체검안서</u> 1부	1. ----- ----- ----- ----- <u>견</u> <u>안서</u>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생략)

② ~ ④ (생략)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 아

----- 아
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장제보상</u>	3. <u>장례보상</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 ④ (생략)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전거등록스티커를 대체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치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자전거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 ----- ----- ----- ----- ----- ----- ----- ----- ----- ----- ----- <u>맨눈</u>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압수·수색영장) 법 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제43조(압수·수색영장)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u>봉인지</u>	4. ----- <u>봉인 표시</u>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② (생략) ③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u>비망계정(備忘計定)</u> 은 재정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u>아니한다</u> .	제13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비망계정(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한다)</u> ----- <u>않는다</u> .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u>아니하는</u>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u>장기선수수익</u> 등을 말한다.	제24조(기타비유동부채) ----- ----- <u>않는</u> ----- ----- <u>장기 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u>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생략)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u>감안하여</u>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고려하여</u> ----- -----.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동 또는 부락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마을</u> ----- ----- ----- -----.
제2조(시상의 종류) ① (생략)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동 또는 <u>부락</u> 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동 또는 <u>부락</u> 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동 또는 <u>부락</u> 에 수여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마을</u> -----. ③----- ----- <u>마을</u> -----. ④----- ----- <u>마을</u> -----.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	제3조(시상권자) -----

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	-----.
이 특히 우수한 리·동 또는 <u>부</u>	----- <u>마</u>
<u>락</u> 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u>을</u> -----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	-----
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	-----
청할 수 있다.	-----.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
리·동 또는 <u>부락</u> 은 도지사(부	----- <u>마을</u> -----
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	-----
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	-----
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	-----
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	-----
관이 정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 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u>인영</u> 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 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 ----- ----- <u>인영</u> (<u>印</u> <u>影</u> : 도장을 찍은 모양)----- -----. ----- -----.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 1항에 따른 직인은 그 <u>직의 서</u> <u>리</u> (<u>署理</u>)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직인의 사용) ----- ----- <u>직무대</u> <u>리</u> -----.